

문서번호	장애인복지정책과-7442
결재일자	2018.4.2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장애인거주시설팀장	장애인복지정책과장

I·SEOUL·U

'18년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(안)

2018. 4.

장애인복지정책과
(장애인거주시설팀)

2018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계획

자립의지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주택 및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

I 사업 개요

□ 추진근거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19조(사회적응훈련) 및 제53조(자립생활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」 제5장(지역사회 전환)

□ 추진경과

- 2009. 12. 운영사업자 공모, 체험홈 3개 운영
- 2010. '전국 최초' 장애인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설치, 자립생활가정 최초입주 자립생활체험홈(15개소), 자립생활가정(15개소) 운영
- 2015. 기존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을 자립생활주택으로 변경 자립생활주택 가형(25개), 나형 운영(30개소)
- 2016.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다형 운영(8개소)
- 2017.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계획 수립

□ 운영체계

- 서울시 : 자립생활주택 운영 총괄
- 자치구 : 운영사업자 및 자립생활주택 관리 지원
- 복지재단 : 자립생활주택 운영 실무, 입주자 총괄 지원, 장애인 전환서비스 등
- 운영사업자 : 자립생활주택 관리, 입주자 자립 지원

□ 운영형태

- 운영 사업자 : 31개(사회복지법인 6, 사단법인 1, 비영리민간단체 24)
- 운영 방식 : 1개 운영사업자가 1개 이상 자립생활주택 운영
- 현 황

주택수(개소) \ 운영사업자(개소)	1개소	2개소	3개소	4개소	5개소
31	9	14	3	4	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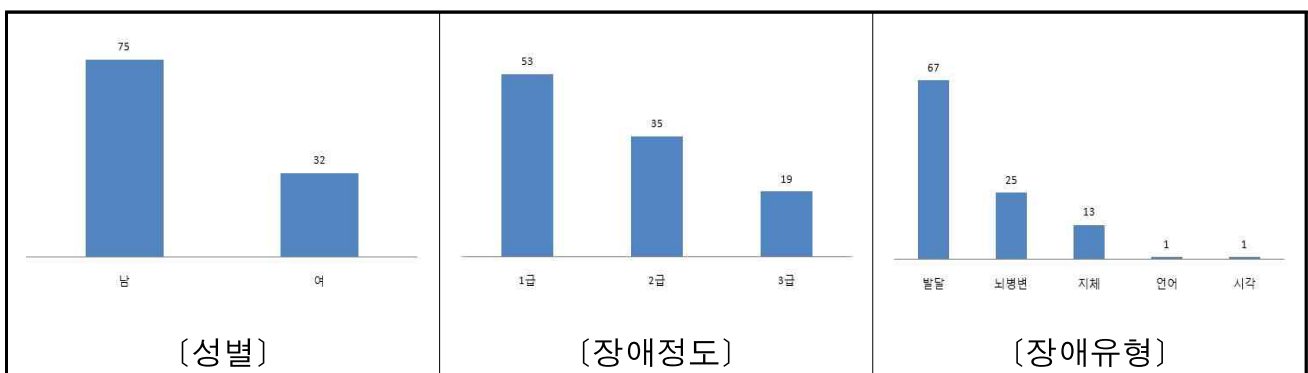
□ 주택현황

- 주 택 : 총72개소 운영
 - 가형 35개소, 나형 17개소, 다형 18개소, 체험형 2개소
- 이용기간 : 2년 이내(장애특성에 따라 연장가능, 최장 7년)
- 지원내용 : 일상생활, 지역사회 체험 및 직업탐색 지원 등
- 이용기준 :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시설 거주 장애인

□ 거주인 현황

- 입주자격 :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생활인 및 퇴소기간 1년 미만인 퇴소자
- 이 용 인 : 107명(남자 70%, 1급 장애인 50%, 발달장애인 63%)

구 분	계	성별		장애정도			장애유형				
		남	여	1급	2급	3급	발달	뇌병변	지체	언어	시각
인원(명)	107	75	32	53	35	19	67	25	13	1	1
비율(%)	100	70.1	29.9	49.5	32.7	17.8	62.6	23.4	12.2	0.9	0.9



II

누적 운영 실적

□ 자립생활주택 현황

- 2009년 3개소의 체험홈에서 출발, '17년까지 총 65개소로 꾸준히 증가

구분	'17년	'16년	'15년	'14년	'13년	'12년	'11년	'10년	'09년
시설수(개소)	65	62	55	55	55	52	41	30	3
증가수(개소)	3	7*	0	0	3	11	11	27	3

□ 연도별 이용현원

- '09년 부터 '12년까지 이용자 점진적 증대, 이후 '15년까지 유지
- '16년 다형의 신설 등으로 이용자 대폭 증가

구분	'17년	'16년	'15년	'14년	'13년	'12년	'11년	'10년	'09년
이용자수(명)	114	115	89	85	90	76	30	29	6
증가수(명)	-1	26	4	-5	14	46	1	23	-

□ 퇴거자 현황

- '09년도 이후 총 113명 퇴거, 지역사회자립 77명(68%)으로 가장 많고 시설복귀 23명(20%)임
- 지역사회자립의 경우 본인마련주택(일반주택)이 19명(25%)과 서울시 전세자금지원 19명(25%)이 가장 많고, 영구임대주택은 12명(20%)순임

퇴거유형	인원
가정복귀	4
공동생활가정	5
기타	4
시설복귀	23
지역사회자립	77
합계	113

지역사회자립	인원
LH임대	5
SH임대	19
서울시전세자금지원	14
영구임대	12
의료안심주택	2
본인마련주택(일반주택)	17
장애인특별공급(일반주택)	2
합계	77

Ⅲ

'17년 운영실적

□ 예산집행 : 금2,344백만원(예산 3,166백만원의 74%)

□ 주택 확충 : 신규 SH 10호

□ 이용인 입·퇴소

○ 입소 : 20명(가형 15명, 다형 5명)

○ 퇴소 : 23명(지역사회 자립 22명, 시설 복귀 1명)

□ 문제점 및 개선방안

○ 자립생활주택 가형 임차료 부담(월평균 약83만원)

☞ 향후 자립생활주택 가형 재계약 시점 도래 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

○ 자립생활주택별 코디네이터 채우기준 상이

☞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적용 인건비 지급 권고(시급 9,211원)

☞ 질적인 인력 안정화를 위해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추진

○ 자립생활주택 모든 이용자 대상의 일반화된 이용기간

☞ 이용자 개인별 자립역량에 따른 이용기간의 유연화 도모

☞ 자립준비 강화 및 기간 축소를 통한 자립생활주택 활용 선순환

○ 거주시설 이용자 욕구가 미반영된 공급자 중심의 입주지원

☞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주도 중심의 입주지원으로 절차개선

☞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주거전환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

○ 운영사업자와 자립생활주택 접근성이 낮아 주택관리 곤란 및 업무책임성 저하

- 운영사업자 관리 주택이 원거리에 있어 코디네이터 업무 과중

- 운영사업자 법인 소재지와 주택소재 자치구가 상이하여 자치구 직원의 업무과중

☞ 신규 운영사업자 선정 시, 주택 위치, 운영사업자 소재지 최대한 고려하여 선정

IV

'18년도 운영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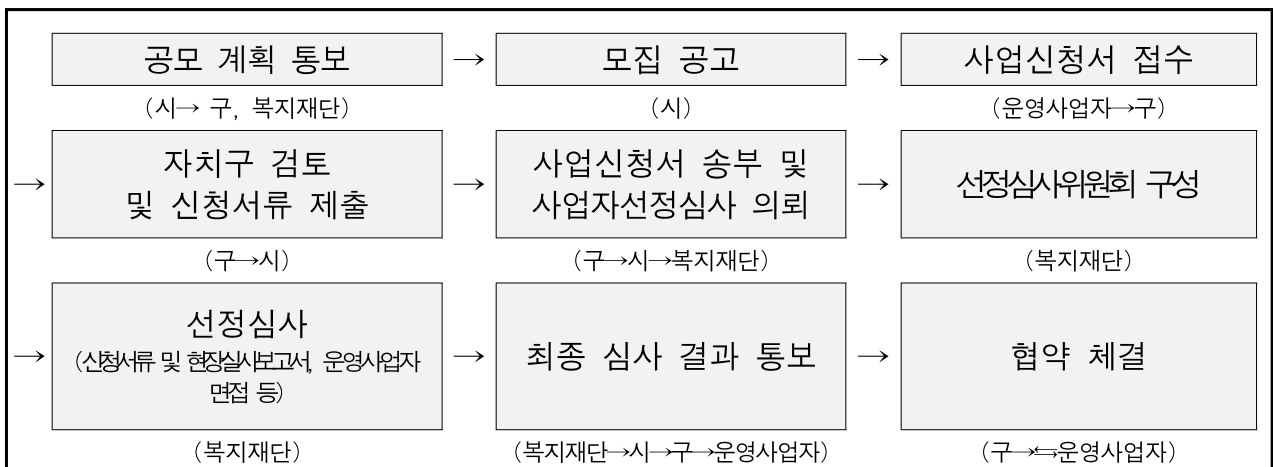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방향

- 시, 자치구, 복지재단, 운영사업자간 업무 협력을 통한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
- 철저한 현장실사 및 심의 강화를 통한 우수 운영사업자 선정 및 재협약 실시
- 시설안전 및 거주인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 운영
- 지속적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

□ 주요 사업 계획

① 장애인자립생활주택 5개소 확대

- 방법 : 신규 주택확보(공공임대주택) 후 운영사업자 선정
- 시기 : 연 2회(5월, 11월)
- 예산 : 300백만원
- 사업자 선정(※ 별도계획 수립 추진)
 - 신청 대상 :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민간단체
 - 선정 방법 :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
 - 심사 내용 : 공신력, 재정능력, 사업능력, 대표역량 등
 - 절 차



②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운영 개선

- 기존 및 신규 자립생활주택 ‘가형’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
 - 내용 : 자립생활주택 ‘가형’을 서울시에서 확보(SH, LH)
 - 대상 : 기존 및 신규 자립생활주택 가형
 - ※ 별도계획 수립 추진
-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인상
 - 내용 : 자립생활주택 운영보조금 5% 인상
 - 대상 : 자립생활주택 가, 다형
 - ※ 나형 주택은 유형변경 추진 중으로 인상 적용불가(9,868천원/연)
 - 시기 : '18년 1분기별 보조금 신청 시 부터
- 자립생활주택 인건비 개선
 - 내용 : '18년 서울시생활임금기준 적용 권고(※ 시급9,211원)
 - 대상 : 자립생활주택 가, 다형 코디네이터
 - 시기 : '18년 인건비 적용

③ 자립생활주택 나형 유형변경

- 근 거 : 장애인복지정책과-9157(2017.5.29.)호
- 내 용 : 공실예정 주택대상으로 변경기준에 의거 유형변경 추진
- 대 상 : 자립생활주택 나형(※'18년 필수대상 : 도봉노적성해L, 님복지재단, SRC)
- 처리 방법 : 입주자 퇴거완료 후 1개월 이내 유형변경 승인요청 공문 발송
- 추가운영비 : 3,033천원/연(※가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전환(2년 이내) 시까지)
- 유의 사항 : 유형변경 추진 실시 이후 가형에서 나형으로 입주자 전환 불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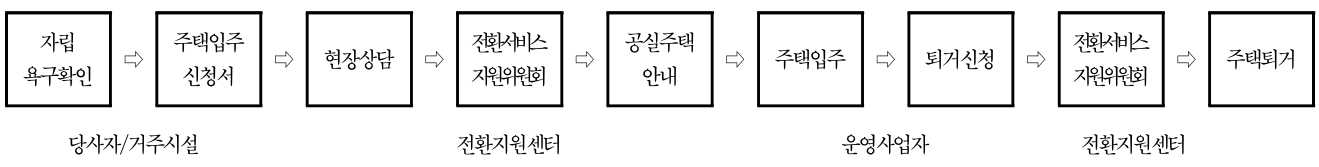
④ 자립생활주택 이용기간 개선

- 근거 :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(장애인복지정책과-20274호, 2017.12.20.)
- 방향 : 거주시설에서부터의 자립준비 강화로 퇴소 후 중간 훈련기간 단축
- 내용 : 현행 거주기간 7년에서 2년으로 단축(※ 장애특성 고려 최장 7년 연장 가능)
- 방법 : 사례회의를 통한 입주지원위원회에서 결정 후 결과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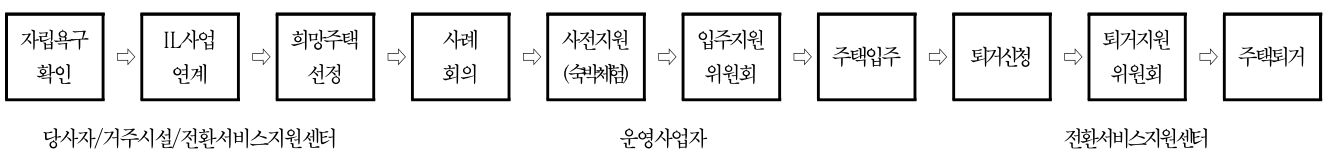
⑤ 자립생활주택 입주절차 개선

- 방 향 : 공급자 중심에서 당사자 주도 중심의 입주 지원으로 개선
- 시 기 : '18년 하반기부터
- 이용절차

- 현행



- 개선



- 이용절차 개선 비교

구분	현행	개선
사전지원강화	거주시설-IL 네트워크사업 선택	IL네트워크사업 연계 필수
	사전지원(단기체험 등) 선택	사전지원(단기체험 등) 필수
주택결정	전환서비스지원센터에서 주택배정	당사자 입주주택 선택
전환서비스지원위원회	입퇴거 통합운영	입퇴거 분리 운영
	전환서비스지원센터 주관	입주: 운영사업자/퇴거: 전환서비스지원센터

⑥ 탈시설 체험 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

※ 별도계획 수립 추진

- 내용 : 장기간 시설에 거주한 장애인들에게 탈시설 체험 및 자립 동기 부여를 위해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
- 대상 :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(체험홈 미운영 시설 이용 장애인 우선)
- 방법 : 체험전용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자 선정, 위탁 운영
- 규모 : 남녀 각 1개소씩 총 2개소 시범운영, 2년간 운영 후 확대여부 결정

⑦ 자립생활주택 기존 운영사업자 재협약

- 대 상 : 재협약 시기 도래한 기존 운영사업자 23개소

구분	세 부 내 용
상반기(4)	SRC보듬터, 성민복지관, 은평IL,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하반기(19)	구로IL, 굿잡IL, 남은자IL, 노들IL, 마포IL, 님복지재단, 서울IL(2) 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, 새날동대문IL, 서대문햇살IL, 성북IL 우리동작IL, 은평늘봄IL, 은평IL(2), 이음IL, 중구길벗IL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

- 방 법 : 재협약 신청(사업자)→현장실사 및 심의(재단)→최종 선정(시)
- 시 기 : '18년 연2회
- 협약기관 : 자치구, 운영사업자
- 재협약 및 신규 심사지표 개선
 - 재협약 가능 최저점수 상향조정(60점→70점)
 - 기존 운영사업자가 신규심사 대상이 될 경우 공신력 항목은 이전 심사결과 반영

⑧ 소규모 거주시설 안전관리 지속 추진

○ 주택별 소방안전 관리

- 대 상 : 장애인 자립생활주택
- 시 기 : 연 1회
- 점 검 자 : 운영사업자, 소방서
- 점검방법 : 관할 소방서에 점검신청
- 점검내용
 - 재난대응 매뉴얼 비치, 비상 대피로 확보, 안전점검표 비치 및 체크 여부
 - 종사자(연2회) 및 입주자(연1회) 대상 안전교육 실시 여부
 - 입주자 대상 모의훈련 분기별 1회 실시 여부
 - ‘안전설비 설치기준’에 의거 안전설비 설치 및 관리 상태 양호 여부

○ 스프링클러 설치주택 점검사항

- 대 상 : 2014년 스프링클러 설치 주택
- 점검자 : 운영사업자(전문소방점검업체 의뢰)
- 내 용 : 패키지 및 설비일체 점검, 패키지 수조 소화용수 방수 및 보충 등
- 예 산 : 소방점검업체 의뢰 시 연20만원 지원

○ 소방재난본부 연계 안전관리 서비스 지속(연중)

- 대 상 :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72개소
- 내 용 : 소방안전교육, 소방시설 점검지원 등
- 방 법 : 주택 주소, 실무자 연락처 등 수시 현황 제공 및 공유

*서울시복지재단 →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구조대책팀

*2015.9월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시복지재단 MOU 체결

⑨ 자립생활주택 운영 지도·감독

※ 별도계획 수립 추진

- 대 상 :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72개소
- 시 기 : '18년 하반기
- 점 검 자 : 해당 운영사업자 관할 자치구
- 점검내용
 - 입주 장애인 현황 파악, 자립생활 프로그램 운영 여부, 코디네이터 교육 등 활동 상황 확인
 - 보조금 사용 규정 준수 여부, 재물조사 등 회계 관련 사항
 - 소방, 전기, 가스 점검 여부, 안전 대피 교육, 방화관리 등 이용인 안전조치사항

⑩ 자립생활주택 운영평가 및 모니터링 실시

- 대 상 : 장애인 자립생활주택
- 내 용 : 입주자 개별지원 및 주택운영관리(회계포함)영역 전반
- 방 법 : 자치구 및 재단(전문가 포함) 합동 모니터링 ※별도지표 활용
- 시 기 : '18년 하반기

V

예산 집행 계획

□ '18년 예산 : 총 3,551,346천원(시비 100%)

○ 운영보조금 지원 : 3,220,856천원

- 주택 유형별 운영비 지원 기준

- '가'형(운영사업자, 서울시 확보주택) : 운영비 42,146천원/년
- '나'형(서울시 확보주택) : 운영비 9,868천원/년
- '다'형(서울시 확보주택) : 운영비 63,000천원/년
- '체험형'(서울시 확보주택) : 운영비 63,000천원/년

- ☞ 가, 다형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5% 인상(나형 제외)
- ☞ '가'+나(+나)'형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통합사용 가능(주택실비, 보증금증액분 포함)
- ☞ 운영 사업비 중 최소 10%는 입주자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

○ **주택 확보(5개소) 및 비품 및 편의시설 지원 : 315,798천원**

- 신규주택확보 : 195,798천원
- 신규주택 비품 및 편의시설 설치비 : 120,000천원

○ **기존 주택관리 : 14,692천원(붙임1 참고)**

- 노후주택 비품 및 편의시설 수리비용 : 10,000천원
- 소방안전 관리 : 4,692천원(스프링클러 점검비용)

□ 보조금 지원

- 지원방법 : 분기별 신청에 의거 지원 ※ 스프링클러 점검 및 비품수리 비용 포함
- 지원절차 : 시 → 자치구 → 운영사업자
- 검 토 : 자치구에서는 신청 보조금 적정 여부 확인 후 제출

□ 보조금 집행 및 정산

- 보조금 전용 계좌 및 카드 사용 철저
- 목적 외 보조금 사용, 횡령 등 회계사고 및 형사문제 발생 시 보조금 회수 및 차등화, 지원 대상 해지될 수 있음
- 사업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 조치
(분기별 정산 : 운영기관 → 구, 최종 정산(12월) : 운영기관 → 구 → 시)
※ 중도 폐쇄 시 회계연도 중 정산보고 완료

□ 자치구

-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실태 지도감독 철저(연1회 이상)
 - 지적사항 조치 철저 및 시로 점검결과 보고
- 자립생활주택 운영 관련 제반사항을 이행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행
 - ※ 자립생활주택 (재)협약, 주택 재계약, 주택 관리, 예산 교부 등
- 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자립생활주택 모니터링 시 협조

□ 운영사업자

- 자립생활주택 운영 자치구 직원과 시설 회계 담당자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는 회계교육에 반드시 참석
- 자립생활주택 운영 보조금 예산 집행 기준 준수 철저
 -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·회계 규칙」, 「자립생활주택 예산집행기준」에 근거한 세입, 세출과목 설정 및 재원별 집행 철저
- 보조금 전용 카드 의무 사용
 - 부식비, 유류비, 공과금 등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 사용
 - 소액 경비 지출 전용카드 의무 사용
- 서울시 복지재단의 교육 및 간담회 등 적극 협조
 -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, 운영사업자 간담회 등 적극 참여
- 운영기관에 보조금지원 표지판 의무 설치(※자립생활주택에 설치 불가)
 -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참고

① 스프링클러 점검비용 지원

- 대상 : 스프링클러 설치 주택
- 내용 : 스프링클러 소화용수 보충 및 점검비용
- 시기 : 연 1~2회
- 기준 : 개소당 연1회 20만원 내 지원(전문소방점검업체 의뢰비용)
- 제출서류 : 점검결과보고, 점검사진 4매 이상, 영수증 1부

② 노후주택 비품 수리비용

- 대상 : '15년 이전 운영을 시작한 주택
 - 내용 : 노후화된 비품 수리비용(벽지, 장판, 싱크대)
 - 시기 : 연중(분기별 예산 신청 시)
 - 기준 : 개소 당 100만원 내 지원(예산 소진 시까지)
 - 신청제출서류 : 수리가 필요한 비품 사진 4매 이상, 견적서 1부, 비교견적서 1부
- * 각 자치구는 수리가 필요한 비품의 노후화,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승인 후 보조금 신청